#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안 번호 131

제출년월일: 2023. 5.

제 출 자:평창군수

## I. 제안이유

2022회계연도 결산을 「지방자치법」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Ⅱ. 주요내용

- 1. 결산개요 : 주민이 알기쉬운 결산정보 "별첨"
- 2. 세입·세출결산

가. 총괄

(단위 : 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비율	세출결산액	비율	잉여금	비율
1 4	P)	(J)	(L)=(J)+(L)	라	라/마	0)	마/다	바=라-마	바/다
합 계	771,148,782,000	125,437,111,786	896,585,893,786	900,457,803,851	100.43	648,019,141,609	72.28	252,438,662,242	28.16
일반회계	698,253,371,000	113,300,095,996	811,553,466,996	814,830,831,490	100.40	591,498,673,108	72.88	223,332,158,382	27.52
특별회계	72,895,411,000	12,137,015,790	85,032,426,790	85,626,972,361	100.70	56,520,468,501	66.47	29,106,503,860	34.23

### 나.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액 ⑦	전년도이월액 Û	예산현액 따=沙+따	징수결정액 라	실제수납액 마	불납결손액 빠	미수납액 사=관-마-바	비율 마/다	
합	계	771,148,782,000	125,437,111,786	896,585,893,786	906,754,334,026	900,457,803,851	1,042,567,219	5,253,962,956	100.43	99.31
일반	반회계	698,253,371,000	113,300,095,996	811,553,466,996	820,254,531,617	814,830,831,490	1,042,567,219	4,381,132,908	100.4	99.34
특별	별회계	72,895,411,000	12,137,015,790	85,032,426,790	86,499,802,409	85,626,972,361	0	872,830,048	100.70	98.99

### 다.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낸	예산액 ⑦	예산성립후증감액 (나)	예산현액 따=⑦+Û	지출액 라	다음연도이월액 •		집행잔액 사=다-라-마-바
합	계	771,148,782,000	125,437,111,786	896,585,893,786	648,019,141,609	191,832,190,868	16,842,839,407	39,891,721,902
일빈	<u>-</u> 회계	698,253,371,000	113,300,095,996	811,553,466,996	591,498,673,108	164,228,381,739	16,640,286,293	39,186,125,856
특별	불회계	72,895,411,000	12,137,015,790	85,032,426,790	56,520,468,501	27,603,809,129	202,553,114	705,596,046

### 라.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단위 : 원)

	분	결산상잉여금		다음연도	보조금	순세계			
7	正	2000Ma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실제반납금	잉여금	
합	계	252,438,662,242	191,832,190,868	104,059,519,778	10,268,718,000	77,503,953,090	16,467,783,407	44,138,687,967	
일반	회계	223,332,158,382	164,228,381,739	94,308,861,629	9,097,377,280	60,822,142,830	16,265,230,293	42,838,546,350	
특별	회계	29,106,503,860	27,603,809,129	9,750,658,149	1,171,340,720	16,681,810,260	202,553,114	1,300,141,617	

## 마.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사용

○ 예산이용 : 없음

○ 예산전용 : 21건 384,629,000원

○ 예산이체 : 215건 58,500,869,880원

### 바.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구 분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예비비	13,920,000,000	2,437,063,000	1,755,701,930	0	681,361,070

## 3. 기금결산

(단위 : 원)

	전년도 말		당해연도 말		
구 분	 조 성 액	증가 또는 조성액 감소액		사용액	조 성 액
Я	14,287,738,180	11,580,145,595	15,399,795,066	3,819,649,471	25,867,883,775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445,001,029	△814,586,023	57,050,057	871,636,080	4,630,415,006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0	11,000,301,360	11,000,301,360	0	11,000,301,360
평창군자활기금	0	253,413,575	253,413,575	0	253,413,575
평창군체육진흥기금	3,487,544,987	△511,556,196	734,126,844	1,245,683,040	2,975,988,791
평창군식품진흥기금	143,214,500	△14,054,680	38,562,716	52,617,396	129,159,820
평창군재난관리기금	793,380,991	178,470,745	1,019,094,210	840,623,465	971,851,736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129,050,773	43,682,254	52,779,254	9,097,000	172,733,027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4,289,545,900	1,444,474,560	2,244,467,050	799,992,490	5,734,020,460

## 4. 재무제표

(단위 : 원)

구 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회계별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결과	
일반회계	3,277,191,432,722	59,818,528,320	3,217,372,904,402	454,310,827,364	652,521,103,400	(198,210,276,036)	
기타특별회계	238,782,261,200	1,299,363,131	237,482,898,069	26,706,370,468	33,666,446,896	(6,960,076,428)	
기금회계	27,199,206,981	4,501,961,300	22,697,245,681	2,989,470,653	15,432,703,887	(12,443,233,234)	
지방공기업특별회계	297,542,413,568	10,011,060	297,532,402,508	18,133,576,912	7,766,481,034	10,367,095,878	
내부거래	(171,663,579,000)	(9,000,000,000)	(162,663,579,000)	(31,014,944,080)	(31,014,944,080)	0	
합 계	3,669,051,735,471	56,629,863,811	3,612,421,871,660	471,125,301,317	678,371,791,137	(207,246,489,820)	

## 5. 성과보고서

(단위 : 원, 개)

실국별	전략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목표수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 계	22	80	156	21	81	54	616,442,056,588
기획실	1	2	8	2	5	1	41,763,077,867
정책담당관	1	1	1	0	1	0	13,668,870
행정지원국	8	30	53	6	26	21	201,481,916,469
경제건설국	8	32	61	6	33	22	255,058,812,968
보건의료원	1	5	5	1	2	2	15,538,012,607
농업기술센터	1	7	19	6	10	3	74,998,152,806
의회사무과	1	1	1	0	1	0	835,580,858
상하수도사업소	1	2	8	0	3	5	21,504,360,340
읍면사무소	0	0	0	0	0	0	5,248,473,803

※ 결산액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